

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
해외이주·유학 예정이라면
출국 전 반드시
해외이주·유학신고를
하셔야 합니다

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**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**되며 제44에 의거하여 **1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해외유학생 신고 및 상환의무

해외이주자 신고 및 상환의무



신고의무

-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을 **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**

신고대상

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·기술을 연구(연수)하는 것 (교환학생, 자비유학(해외대학원진학 포함), 어학연수, 워킹홀리데이, WEST프로그램, 해외인턴십, 해외봉사 등)

증빙서류

본인의 이름과 유학기간이 표시된 공적기관 발급 서류

신청경로 | 홈페이지

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해외이주/유학신고

신청경로 | 모바일앱

서비스 → 학자금대출 → 해외이주/유학신고 → 신고하기

- **유학계획변경 신고** | 학업연장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
- **귀국신고** | 유학 종료 후 **귀국 즉시 재단 홈페이지(앱)**를 통해 신고 (**출입국증명서 업로드**)

※ 귀국신고를 완료해주셔야 기등록된 보증인이 해제처리 됩니다.

상환의무

- **유학 신고 완료한 해외유학**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

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 (20년도 상환기준소득: 1,323만원)

- **학업종료 예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** 전액상환 의무부과

신고의무

-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**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**하고 ‘전액상환’ 또는 ‘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’ 체결

홈페이지

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해외이주/유학신고

모바일앱

서비스 → 학자금대출 → 해외이주/유학신고 → 신고하기

상환의무

-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**대출원리금 전액상환**

홈페이지

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중도상환 → 전액상환

- [전액상환불가시] **보증인 입보 완료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**

보증인 입보 방법

‘연대보증 신청서’(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) 및 ‘증빙서류’(보증인 “본인서명사실확인서” 또는 “인감증명서”, 보증인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)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재단 현장지원센터에 방문

※ 보증인이 직접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) 불필요(단, 신분증 지참 필수)

※ 신청서 양식: 재단 홈페이지 → 고객센터 → 자료실 → 게시글 “해외이주/유학신고에 따른 연대보증인 입보 양식” (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수 증빙자료 확인)

분할상환 전환약정 홈페이지

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 상환 →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전환약정 신청